

# 호주의 군 복무발병 질환의 보상에 관한 일차 연구

김태열

본 연구는 호주의 군 복무 발병 질환 보상에 대한 일차 연구 논문으로 향후 한국의 군 복무관련 질환 보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감염 및 기생충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감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 무종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15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쿠싱 증후군, 당뇨, 갑상선증, 통풍, 사코이드증, 흥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동반한 기관지염, 폐기종 동반한 기관지염기종,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수면성 무호흡 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진통제 신장병, 양성전립선 비대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신장병 등 총9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만성 콩팥장애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시 되며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발병 질환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주제어:** 특수임무수행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군 질환, 소아내분비질환, 호흡기질환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 제대 군인의 의료지원 및 보상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 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각종 신체적인 손상 및 장애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군복무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신체적인 손상과 차별을 두지 않고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무상의료는 물론 일반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연금 혜택까지 포괄적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하에 국가보훈처는 2007년 병원경영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공동 의뢰하여 군복무 관련 질환의 보상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08년 군복무와 관련해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 각 질환별 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

나 세부적으로 의료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의 극히 제한된 질환을 대상으로 단순한 의료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중증장애 합병 없이는 선진국과 같이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여 각종 연금 지원을 제공 받기는 매우 힘든 현실이다. 무엇보다 군복무와 발병된 질환의 경우 군 복무와의 입증 책임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의 군 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은 보훈부의 인정 준칙에 의거하는데 군 복무와 상해, 질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확립에 사용하며, 보훈의료위원회(Veterans Medical Authority)에서 인정준칙을 제정한다. 1994년 도입된 이 준칙은 상이심사 신청자와 심사자 양측에게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의학적 근거에 준한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질병인정 준칙 즉 SOPs(Statement of Principles)<sup>1)</sup>가 다루고 있는 질환 및 상해는 2013년 4월 19일 현재 총 327개로서 호주 보훈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일차 상이판결의 90%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다(RMA Chairperson, 2005-2006 Annual Report). 호주의 경우 보훈부에서 인정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10대 질환을 2005-2006년 기준 40,000건 중 군 복무와 관련 질환을 분석해 본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과 변형성 관절증이 9%로 가장 많았고 이명증, 일광각화증, 요추척추증 6%, 피부의 비흑색 악성 신생물 5%, 허혈성 심장질환 4%, 후천성 백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혈압은 3%로 분석되었다(국제보훈워크샵, 2006). 선진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복무 관련 질병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시 장애가 있으면 질병치료에 있어 무상으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훈연금 혜택까지 지원해주고 교육, 취업, 예우 등 포괄적인 의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의 극히 제한된 질환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진료 시 의료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판정에 있어 거의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제대군인의 군복무질환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머스타스가스질환, 군복무 직접질환, 간접질환, 추정질환, 전쟁포로 질환 등 세부적으로 군복무질환 인정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한편의 연구가 있었다(임현술, 2002). 그리고 외국의 보훈제도 종합비교연구에서는 외국의 의료제도 소개 및 의료 지원 범위를 제시하였고(보훈교육연구원, 2005), 전광석(2004)의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에 있어 상이등급 장애등급 판정 방법 및 보상범위에 대한 연구와 군복무 관련 질환자 의료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류양식, 2010)가 주된 연구로 조사되었다. 최근 논문으로 김태열·장문선(2009)연구에서는 로사검사를 이용한 베트남 참전 제대군인의 일반적 특성과 군 복무 경험 중 특성에 따른 심리질환에 대한 연구, 김태열(2012)의 MMPI- PTSD 측정 기법을 이용한 고엽제 환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질환 수준이 전체 45점 중 평균 2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 논문이 가장 최근의 연구 논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군복무질환의 연구는 미국의 군복무 중 발병질환에 대한 직접, 간접, 추정질환의 인정 기준 연구, 외국의 의료지원제도 비교연구, 베트남 참전 고엽제 환자의 심리 질환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질환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군복무질환의 보상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호주 제대군인부의 국제질병분류(ICD)에

1)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질환 및 상해를 명시하는 체계로서 질병·상이 판결을 위한 호주의 인정 준칙

의거 군복무질환 인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군복무 중 발병질환 인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준을 갖춘 호주 제대군인부의 군 복무 관련 질환 인정 기준을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하여 향후 국가보훈처의 군복무관련 질환 보상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체계화, 전문화된 호주의 군 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을 분석하고 필요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질병에 관한 보훈심사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호주의 군 복무질환 분류군별 질병 인정 범위를 분석하고 둘째, 감염 및 기생충 질환을 분석한다. 셋째, 내분비, 영양, 대사, 면역질환을 분석하며 넷째, 호흡기 비뇨기 질환을 분석한다. 다섯째, 호주의 질병보상 기준과 한국의 질병 보상 기준을 비교하고 특히 보훈심사위원회의 질병보상 판정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군복무질환의 보상 심의 시 기초 자료를 제시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기간 및 범위

본 연구 기간은 2012년 1월 10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 범위는 호주의 군복무 질환 분류군별 질환 수 총 327개 질환 중 62개 질환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군 복무 질환에 대한 질병 인정 기준을 분석해 보면 감염 및 기생충 질환 27개,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 15개, 호흡기계 11개, 비뇨생식기계 9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 절차는 먼저 호주 제대군인부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을 제시한 후 한국의 군 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조사 방법은 군 복무질환의 질병인정 준칙(SOPs)에 의거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에 의한 항목별 질병인정 범위를 기초로 연구하였고 필요 시 한국표준질병분류(KCD)를 참고하여 국가보훈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기준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히, 보훈심사위원회의 군 복무 질환 판정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I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의 군복무질환

##### 1)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배경

업무상 질병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 책임에 따른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므로 공동책임을 통해 사회 보험화하는 추세이다. 즉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의 등장으로 사회연대책임에 바탕을 두려고 한다. 제도의 근거 배경은 질병이나 외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제대군인에게 현행법상의 보상 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근거 법으로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법은 관련 제도들의 기준이 되면서 그 연혁이나 제도적 충실함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 제도는 산업 발달에 따른 재해의 위험성을 사회적 공적 급여로 일찍이 인식하여 개인의 위험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책임에 근거한 보상이론의 준거가 된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의 근대적 원인개념을 넘어 무과실 책임의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병원경영연구원·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7).

##### 2) 무과실책임설

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다(이상국, 200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위험책임 이론이다. 이것은 위험시설의 소유자가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물 관리자의 절대적 주의 의무를 부과한 이론이다. 둘째, 원인책임이론으로 이것은 물리적 시설 등에 의하여 손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그로부터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위험시설이든 아니든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적 시설에 의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물적 책임에 의하여 보상의 책임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셋째, 공평책임이론으로 이것은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유무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여 공평하게 분담시켜야 하는 이론이다. 넷째, 보상책임이론이다. 이 이론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의 귀속자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당연히 귀속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이것은 기업위험의 현실화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결합하여 보상책임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병원경영연구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 3) 한국의 군복무관련 질환자의 판정 기준

군복무관련 질환자의 지원 및 보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 1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 6조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 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한다. 둘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 상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 공상 질병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즉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 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질병이어야 하는 것으로 질병마다 고유의 역학(Epidemiology)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판정은 개개의 질환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병의 유발 악화인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질병일 경우 질병의 역학을 검토하여 해당인들이 당해인의 군복무 생활 중에 발견된다면 보훈대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비해당 판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발병, 악화의 원인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징병검사 시스템에서도 수검자의 기저질환이나 병력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추정 가능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질병이나 군복무중 외상으로 인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가능한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인자의 여부가 공상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군복무중 해당인자가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병원경영연구원·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7).

### 5) 상이등급 구분

법 제 6조의 4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인 상이등급 분류 내용은 1급 1항 5개, 1급 2항 7개, 1급 3항 10개, 2급 10개, 3급 21개, 4급 11개, 5급 18개, 6급 1항 25개, 6급 2항 36개, 6급 3항 6개, 7급 22개 총 172개로 구성되어 있다(국가보훈처 내부자료, 2012).

### 6) 상이등급 판정 방법(시행규칙 제8조)

보상이 되는 장애 범주는 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 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저각기능

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촉각 및 호흡장애, 신장장애, 방광기능장애, 비장장애, 외모추상변형, 생식기능장애, 등을 포함한다(병원경영연구원·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7).

## 2. 호주의 군복무질환

### 1) 호주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인정 준칙(SoPs)

호주의 군 복무와 관련한 질병 인정 기준은 호주의 인정 준칙에 의거하는데 군 복무와 상해, 질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확립에 사용하며, 보훈의료위원회(Veterans Medical Authority)에서 인정준칙을 제정한다. 1994년 도입된 이 준칙은 상이심사 신청자와 심사자 양측에게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의학적 근거에 준한 인과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SOPs가 다루고 있는 질환 및 상해는 2011년 4월 11일 현재 총 327개로서 호주 보훈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일차 상이판결의 95%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다([http://www.rma.gov.au/SOP/sop\\_index](http://www.rma.gov.au/SOP/sop_index) 2013. 4). 인정 준칙 요소는 준전시(이라크전), 비전시(동티모르 파견)와 평시 복무시 인정 준칙에 근거한 질병 관련 심사를 하는데 전자의 경우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심사건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둘째, 심사관은 유효한 인정 준칙이 있는지 판단하며 셋째, 인정준칙이 있다면 가설이 인정준칙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심사관이 타당한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군 복무와 관련한 질병을 인정한다. 평시의 경우 3단계로 분류되는데 첫째 심사관이 적용 가능한 인정 준칙이 있는지 판단하며 둘째 있다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복무와 연관된 인정준칙 요소가 있는지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심사관이 타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는한 인정하고 있다(병원경영연구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 2) 호주의 SOPs의 분류 체계

SOPs는 질환 및 상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 분류 체계는 해부학적·기능적 계통별 구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A~S까지 연속된 15개의 분류 코드(I, O, Q, R 제외) 및 X로 총 16개를 갖는다. A는 감염 및 기생충 질환(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 B는 암(Neoplasm), C는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Endocrine, Nutritional, Metabolic Diseases; Immunity Disorders), D는 혈액 및 조혈 기관(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E는 정신 질환(Mental Disorders), F는 신경 질환, 감각 기관(Nervous System, Sense Organs), G는 순환기계(Circulatory System), H는 호흡기계(Respiratory System), J는 소화기계(Digestive System), K는 비뇨생식기계(Genitourinary System), L은 임신, 출산 및 산욕(Pregnancy, Childbirth and Puerperium), M은 피부 및 피하조직(Skin and Subcutaneous Tissue), N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P는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malies), S는 상해(Injury)이며 기타(Other)는 X로 분류된다(병원경영

연구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표 1> 분류 코드별 해당 질환 군

분류코드	해당 질환 군
A	감염 및 기생충 질환(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
B	신생물(Neoplasm)
C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Endocrine, Nutritional, Metabolic Diseases; Immunity Disorders)
D	혈액 및 조혈 기관(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E	정신 질환(Mental Disorders)
F	신경 질환, 감각 기관(Nervous System, Sense Organs)
G	순환계통(Circulatory System)
H	호흡계통(Respiratory System)
J	소화계통(Digestive System)
K	비뇨생식계통(Genitourinary System)
L	임신, 출산 및 산욕(Pregnancy, Childbirth and Puerperium)
M	피부 및 피하조직(Skin and Subcutaneous Tissue)
N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P	선천성 기형(Congenital Anomalies)
S	상해(Injury)
X	기타(Other)

※ Source: RMA(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

### 3. 미국의 군복무질환

#### 1) 군복무질환 인정 범위

미국의 군 복무 질환은 크게 직접관련 질환과 추정질환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불명에 제대를 하지 않고 10%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평생동안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뇌출혈, 뇌경색, 기관지확장증, 결석, 간경화, 심장염, 간질, 나병, 암,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임현술, 2002). 군 복무와 관련한 추정질환의 경우 만성질환, 열대질환, 전쟁포로 관련질환 및 고엽제 관련질환으로 구분한다. 이는 군복무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퇴역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여도 군복무 관련질환으로 추정하여 장애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그 외 만성병(chronic diseases)인 고혈압, 당뇨, 위궤양, 관절염 등의 여러 만성 질환이 퇴역 1년 안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10% 이상 장애가 생기면 보상된다.

## IV. 호주와 한국의 군복무 발병질환 인정 기준 현황

### 1. 분류군별 질환 수

호주와 한국의 상해 군을 제외한 SOPs 15개 분류군별 구성 질환의 개수는 2013년 4월 현재 호주, 한국 각각 327개, 239개로서 질환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감염 및 기생충 질환)가 각각 27개, 7개, B(암)가 49개, 97개, C(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가 15개, 10개, D(혈액 및 조혈 기관)가 6개, 18개, E(정신 질환)가 12개, 8개, F(신경 질환, 감각 기관)가 44개, 15개, G(순환계; Circulatory System)가 27개, 50개, H(호흡기계)가 11개, 1개, J(소화기계)가 26개, 0개, K(비뇨생식기계)가 9개, 1개, L(임신, 출산 및 산욕)이 각각 0개, M(피부 및 피하조직)이 13개, 0개, N(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이 38개, 24개, P(선천성 기형)가 16개, 0개이며, S(상해) 26개, 3개, X(기타)가 8개, 5개이다.

<표 2 > 군 복무질환 인정 분류군별 질환 개수

분류코드	호주 인정 질환 개수(2013. 4.19)	한국 인정 질환 개수	
A	감염 및 기생충 질환	27	7
B	암	49	97
C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	15	10
D	혈액 및 조혈 기관	6	18
E	정신 질환	12	8
F	신경 질환, 감각 기관	44	15
G	순환계통	27	50
H	호흡계통	11	1
J	소화계통	26	0
K	비뇨생식계통	9	1
L	임신, 출산 및 산욕	0	0
M	피부 및 피하조직	13	0
N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38	24
P	선천성 기형	16	0
S	상해	26	3
X	기타	8	5
합계		327	239

※ Source: RMA(Repatriation Medical Authority) 재수정.

※ <http://www.rma.gov.au>(2013. 4. 19).

### 2 군복무 중 발병질환 일차 분석 (A, C, H, K)

일차적으로 호주와 한국의 군복무 질환에 대한 인정 질환 범위를 분석해 보면 감염 및 기생충 질환 27개,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면역 질환 15개, 호흡기계 11개, 비뇨생식기계 9개 총 62개 질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호주의 군 복무 인정 질환 범위 구성

분류코드	호주 인정질환
A	감염 및 기생충 질환 27
C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 면역 질환 15
H	호흡기계통 11
K	비뇨생식기계통 9
	합계 62

### 3. 호주 감염 및 기생충질환의 인정 기준

호주의 감염 및 감각계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급성 감염성 단핵구증,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독감, 두창, 분선충증, 주혈흡충증 등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다.

<표 4> 감염 및 기생충계통 질환 인정 기준

NO	SOPs	Diseases
1	acute infectious mononucleosis	급성 감염성 단핵구증
2	ascariasis	회충
3	chicken pox	수두
4	clonorchiasis	간흡충
5	dengue fever	덴기열
6	hepatitis A	간염 A
7	hepatitis B	간염 B
8	hepatitis C	간염 C
9	hepatitis D	간염 D
10	hepatitis E	간염 E
11	herpes simplex	단순포진
12	herpes zoster	대상포진
13	hookworm disease	기생충질환
14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 바이러스질환
15	human T cell lymphotropic virus	인간 림프성 바이러스질환
16	influenza	독감
17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시스

<표 4> 감염 및 기생충계통 질환 인정 기준(계속)

NO	SOPs	Diseases
18	malaria	말라리아
19	melioidosis	유비저증
20	opisthorchiasis	간흡충증
21	Ross River Virus infection	로스리버 바이러스 감염
22	schistosomiasis	주혈흡충증
23	Scrug typhus	스크럽티푸스
24	smallpox	두창
25	strongyloidiasis	분선충증
26	tinea of skin	윤선
27	tuberculosis	결핵

#### 4. 내분비계통 질환 인정 기준

호주의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5개 질환으로 쿠싱 증후군, 급성 류마티스 열, 부신기능 부전증, 피부 근육염, 당뇨병, 갑상선종,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5> 내분비계통 대사질환

NO	SOPs	Diseases
1	Cushing syndrome	쿠싱 증후군
2	acute rhematic fever	급성 류마티스열
3	adrenal insufficiency	부신기능부전증
4	dermatomyositis	피부근육염
5	diabetes mellitus	당뇨
6	goiter	갑상선종
7	gout	통풍
8	haemochromatosis	혈색소증
9	morbid obesity	고도비만
10	polyarteritis nodosa	결절성 다발성동맥염
11	sarcoidosis	사코이드증
12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전신 홍반루프스
13	hypopituitarism	뇌하수체저하증
14	polychondritis	다발성연골염
15	microscopic polyangitis	미세성 다발성혈관염

#### 5. 호흡계통 질환의 인정 기준

호주의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알러지성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렴을 동반한 기관지염, 폐기종을 동반한 기관지염, 섬유성 폐질환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부비동 압력손상, 수면성 무호흡 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표 6> 호흡계통 질환

NO	SOPs	Diseases
1	allergy alveolitis	알러지성 폐포염
2	asbestosis	석면증
3	asthma	천식
4	bronchiectasis	기관지확장증
5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sing pneumonia	폐렴을 동반한 기관지염
6	chronic bronchitis and emphysema	폐기종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
7	fibrosing interstitial lung disease	섬유성폐질환
8	pleural plaque	흉막플라그
9	pulmonary barotrauma	폐압력손상
11	sinus barotrauma	부비동 압력손상
12	sleep apnoea	수면성 무호흡

## 6. 비뇨계통 질환의 인정 기준

호주의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진통성신장병, 양성전립선, 만성 항문 소양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역류성 신장병질환을 인정하고 있다.

<표 7> 비뇨계통 질환

NO	SOPs	Diseases
1	analgesic nephropathy	진통성신장병
2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양성전립선비대증
3	chronic pruritis ani	만성 항문 소양증
4	endometriosis	자궁내막증
5	erectile dysfunction	발기불능
6	rapid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7	IGA glomerulonephritis	IGA 사구체신염
8	nephrolithiasis	신석증
9	obstructive& reflux nephropathy	폐쇄성 역류성 신장병

## V. 결과 및 논의

호주 SOPs의 인정 근거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군복무중 질병인정 기준을 논의해 보면 호주의 감염

및 감각계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급성 감염성 단핵구증,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독감, 두창, 분선충증, 주혈흡충증 등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10%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국가로부터 연금은 물론 취업, 교육,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국표준질병분류 기준 B20-B24 질환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5개질환등 총 7개 질환으로 희귀난치성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와의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단일 질병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특정 질병에 관련 규정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인 성문화 방안이 필요하다. 군 복무와 관련한 질환을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례 상 심사 내용(보훈심사위원회 질병별 보훈심사 기준, 2006)을 살펴보면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바이러스로 황달 간경변 등이 나타나며 간암으로의 이행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형 간염 역시 간경화, 간암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감염시점이 군 복무 기간중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호주와 같이 일차적으로 B형, C형을 군 복무질환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경우 후근 신경절에 잠복하여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바이러스는 급성질환으로 일으킬 때에는 수두를 일으키고 주요 증상으로 신경절이 분포하는 피부부위에 통증과 물집이 생기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사례가 있으나 호주의 SOPs의 기준에는 인정하고 있어 향후 이 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폐결핵에 관한 2011년 보훈심사위원회 보상 판례를 분석해보면 입대 7개월경 군복무중 발병,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서 폐결핵 진단으로 후송병원 경유하여 병원 입원해 항 결핵제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 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호에 해당되어 요건심사에 합당한 군 복무 관련 질환으로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의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5개 질환으로 쿠싱 증후군, 급성 류마티스열, 부신기능 부전증, 피부 근육염, 당뇨병, 갑상선종,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내분비계 질환의 경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당뇨를 포함해 홍반루프스, 통풍, 과도 비만까지 인정해 주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병역면제 처분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해 극히 제한적이고 이들 질환에 유병된 경우 의료비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당뇨질환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인슐린의존성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과 자가면역 기전이 크게 작용하여 인슐린 자체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나이가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되며 둘째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는 줄고 스트레스와 과로 흡연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며 주로 성인에게 발병되는 당뇨이다. 2011년 보훈심사위원회 인정 판례를 분석해 보면 직업군인 장교의 경우 공상 불인정 사항으로 판결되었으나 이 경우 아프면 일반 병원에 갈수 있는 영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와 비교해 일반 사병 중 특히 신병의 경우 영내 생활을 하고 휴가 등이 일정 기간 통제하고 특히,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시 고참의 눈치를 보고 상관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당뇨질환의 경우 추후 심

도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풍질환의 경우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체내의 요산이 축적되는데 이 요산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며 결정하게 되며 그 형성 장소가 관절 내부에 생겨 염증을 동반하고 종괴처럼 부어오르게 된다(2006 보훈심사위원회 내부 자료). 이는 2006년 보훈심사위원회 질병별 보훈심사 기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질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 홍반성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 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질환으로 향후 이 질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호주의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알려지성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을 동반한 기관지염, 폐기종을 동반한 기관지염, 섬유성 폐질환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부비동 압력손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J84 폐포단백증 희귀난치성의 경우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다. 2011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순직 한 경우 인정 사례로 1963년 입대한 의무복무자로 입대 3개월경 군 후송병원에서 사망한 자로 병상일지에 객혈, 호흡곤란, 혼수 등을 주 호소로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대엽성 폐렴 진단하에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 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호에 해당됨으로 이 질환에 대한 군복무와 관련된 인과 관계가 성립되면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교육, 취업, 복지 등의 서비스 수혜와 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006년 보훈심사위원회의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 질병의 악화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판례에 있어 이 질환도 군복무와 상관관계가 증명되면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호주의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진통성신장병, 양성전립선, 만성 항문 소양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역류성 신장병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N18만성 콩팥장애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례를 살펴보면 감염후 사구체신염의 경우 잠복기가 짧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간주하여 인정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군복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질환에 대한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 포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자궁 내막염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군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환에 대한 심도있는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인정 질환으로 포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양성전립선 비대증 역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와 한국의 상해질병군을 제외한 SOPs 15개 분류군별 구성 질환의 개수는 2011년 4월 현재 호주는 327개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233개로서 그 보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은 외국에 비해 단순히 군복무질병 보상 인정 기준 범위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복무질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호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질환에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무상 의료는 물론 상이등급 판정에 의거 일반 국가유공자와 차별성이 없이 인정받아 각종 연

금 외 취업, 교육, 복지 등 포괄적으로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군복무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아도 단일 질병으로는 의료비 50%의 감면 외 호주와 같이 취업, 교육, 복지 등 일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는 것은 보상 기준에 있어 성문화된 군복무질환 관련 법률 규정 부재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특히 감염 및 기생충계질환과 비뇨계통 질환의 경우 인정 범위에 있어 다른 질환과의 비교해 인정 범위가 너무 적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와 역학조사 등 추가 연구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질병역학연구소를 신설해 군복무와 관련한 발병 질환을 추가 발굴하고 특히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군복무질환의 연구의 선진국인 호주나 미국의 관련 법률을 참고로 하여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VI. 결론 및 제언

호주의 군복무중 발병 질환에 대한 제대군인부 Sops의 질병 인정 기준에 의거 보상 질환을 종합 요약하면 감염 및 감각계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은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다.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15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쿠싱 증후군, 당뇨, 갑상선증,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호흡기계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기관지염을 동반한 폐기종,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뇨기계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진통제신장염, 양성전립선 비대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신장병, 신결석증 등 총 9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다. 끝으로 군복무질환 보상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국가보훈처의 상이 등급 판정 시 호주와 같이 군복무 중 발병 질환에 대한 심사 및 제대군인의 의료 보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의료보훈심사위원회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 시 1급에서 7급 경상이자까지 판정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군복무 중 발병 질환에 대한 심사 기준을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은 비상임, 상임위원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의사 출신은 의학자문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 회의 참석 시 수당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고 있어 회의 수당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경우 별정 2급으로 국가보훈처 4급이상 공무원, 군 대령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는 특히 질병관련 의료 보훈 심사 시 의학적 전문성 결여로 보훈

심사 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훈심사 상임위원 초빙 시 종합병원급 이상 20년 이상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내과계, 외과계 전문의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훈심사위원회에 질병역학연구소를 신설하여 군 복무질환의 인과관계 및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역학 및 보건학 학위를 갖춘 박사급 전문 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보훈처는 군복무질환자 진료와 초고령화로 인한 보훈대상자들 의료 지원 및 정책을 총괄하는 의료정책과 신설이 필요하고 향후 의료국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 VII.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제약점은 연구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질병군 선정 시 16개 항목 중 우선 4개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쉬움에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주의 군 복무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을 제시한 특히 한국의 질병보상 기준과 비교한 연구로 국내에서 거의 논의 되지 않은 논문으로 시사성과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 향후 연구방향은 2013 하반기 악성신생물, 혈액조혈계, 정신질환에 관한 2차 연구 2014년 순환계, 소화계, 피부계 질환의 3차 연구, 근골격계, 선천성 기형, 상해, 기타질환의 4차 연구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한국행정연구원. 2002. 국가보훈 기능 강화 및 보훈행정조직 발전 방안 연구.
-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의 보훈제도: 호주편.
-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의 보훈제도: 미국편.
- 국제보훈위크샵. 2006.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 2011. 내부자료.
- 보훈심사위원회. 2006. 내부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2012.
- 보훈교육연구원. 2005. 외국의 보훈제도 종합비교연구.
- 병원경영연구원,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7. 군복무질환자 의료지원 확대방안 연구.
- 김태열, 장문선. 2009. 베트남참전 재향군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4(2): 199-217.
- 김태열. 2012. 베트남참전 고엽제 환자의 질병양상 분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예비 연구. 한 국위기관리논집. 8(3): 219-234.
- 이상국. 2006. 산업재해보상법. 서울: 대명출판사.
- 임현술. 2002. 미국 퇴역군인과 군복무관련 질환. 동국의학. 9(1): 71-101.

전광석. 2004. 국가유공자 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헌법학 연구. 10(4): 225-263.  
류양식. 2010. 군복무 관련 질환자 의료지원 확대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00.  
Annu. Rev. Public Health. 1994.  
<http://www.rma.gov.au>. 2013. 4. 1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9.  
*Executive Statement by the RMA Chairperson*. 2007. 2005-2006 Annual Report.  
<http://ko.wikipedia.org/wiki/2012>. 5. 2.

---

**金泰烈**: 계명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영남이공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보건과학계열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보훈의료정책, 고엽제, 북파공작원, 재향군인 외상후스트레스, 심리질환 등 의료·복지 정책 분야이고 주요 논문으로는 보훈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2008), 보훈병원 위탁진료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2009), 로사를 이용한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9)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시 효율적인 응급의료구축 체계구축 방안(2010) 베트남 참전 고엽제환자의 외상후스트레스 관한연구(2012) 등이 있다 (ktypv@naver.com).

투 고 일: 2013년 02월 26일  
수 정 일: 2013년 04월 23일  
게재확정일: 2013년 04월 25일

## Primary Study of Australia Related with Military Diseases Compensation

Tae Yeol Kim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by the planning of compensation range according to Comp Study of Australia related with Military Diseas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the medical compensation policy which concern military Diseases. T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infection and parasite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lia was total twenty-seven Diseases. In concrete, adrenal insufficiency, chicken pox, hepatitis A,B,C,D,E, herpes simplex, influenza, malaria, smallpox, tinea of skin, tuberculosis etc. Second, The endocrine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lia was ten Diseases including Cushing syndrome, diabetes mellitus, gout,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hypopituitarism, morbid obesity. Third,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lia was nine Diseases including alveolitis, asbestosis, asthma, bronchiectasis, chronic bronchitis and emphysema, pulmonary barotrauma. Fourth, The urinary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lia was nine Diseases including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ndometriosis, impotence, glomerulonephritis, nephrolithiasis.

**Key words:** military diseases, infection and parasite diseases, endocrine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